

전자책의 출현과 저작권*)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1992

문헌: 저작권

권호: 20호 (1992년)

출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79]

I. 서론

1. 뉴미디어에 의한 저작물 형태의 다양화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정보매체가 등장함에 따라서 저작물의 복제 및 전달 형태도 다양하게 되었다. 어학용테이프, 동화테이프, 시낭송테이프, 명강테이프 등의 듣는 책 또는 이른바 오디오북도 녹음기 관련기술이 발달하고 그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존재방식이다. 이른바 비디오북도 마찬가지로 VTR이라고 하는 뉴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많이 활용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존재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CD-ROM과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저작물도 새로운 컴퓨터관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형태의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저작자는 인쇄업자에게 원고를 입력시킨 디스켓을 배포업자에게 제공하면 그 배포업자는 저작자의 디스켓에 담긴 저작물에 일련 분류번호를 달아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키고, 일반 소비자는 인쇄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입력된 순간부터 즉시 통신망을 통해서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곧바로 당해 저작물을 접할 수 있고 필요하면 출력(Print-out)해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일반 소비자는 전화요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통신망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그러한 통신망이용료는 배포업자에 의하여 징수되어서 이윤에 충당되고 저작자에게 저작물이용에 비례한 보상으로 지급될 것이다.주1) 과거에 손이나 붓으로 쓴 책들이 지금은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잉크와 활자로 종이위에 다량 인쇄된 책들이 박물관에서야 볼 수 있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리라.

2. 전자책의 정의

전자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아무런 통일된

[80]

개념 정의도 없고 전자책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CD-ROM 형태의 디스크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저장·전달되는 각종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이른바 화면책(또는

모니터북)도 전자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CD-ROM은 통상의 책처럼 그러나 다소 비싼 책처럼 일정한 가격에 판매되고, 화면책은 그 복제물을 일정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이용한 시간에 비례한 요금을 낸다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두가지 전자책 모두 컴퓨터를 통하여만 읽어 볼 수 있는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것이다. 따라서, 전자책이란 문자정보가 종이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전자적 기록매체에 기록되고 컴퓨터의 도움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자책의 출현으로 인하여 많은 저작권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우선 전자책의 대부분이 저작권법상 이른바 편집 저작물이라고 볼 때에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편집저작물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로서의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와 또다른 한편으로는 편집저작물 자체의 저작물성 및 그러한 편집저작물 자체의 보호 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출판권의 범위에 관한 것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편집저작물을 기획 및 제작하는 기업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권리관계이고,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저작물성과 구체적인 보호내용 등에 대한 것이다.

II. 전자책의 제작·보급과 출판권의 범위

특정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도 동일한 저작물을 전자책의 형태로 출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자책을 출판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그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출판권의 범위가 어떠한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출판권의 범위는 저작권자와 출판자와의 사이에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아니면 단순한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출판권설정계약이 체결되면 출판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범위의 배타적인 출판권("설정출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²⁾ 반하여 단순한 출판허락계약이 체결되면 출판자가 가지는 출판권("허락출판권")의 범위는 출판허락계약에 구체적 내용에 따라 좌우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계약의 해석의 문제로 남는다.

우선, 저작권법에 규정된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가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말하면,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등의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발행하는 권리이다. 기계적인 방법에는 인쇄이외에도 각종 현대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 이외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은 출판권의 범위 밖의 행위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하는 복제물 형태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81]

기계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널리 출판이라고 보는 광의의 출판개념에 따라서 출판권의 범위도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의 법규정의 문리해석으로도 그러한 광의의 출판개념은 무리가 있고, 저작권자의 커다란 손실 위에 출판자의 부당한 이익만을 옹호하기 쉬운 균형없는 견해라고 보여진다.

문서 또는 도화는 저작물이 유체물에 재현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복제물을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기계장치에 의하여만 보고 읽고 들을 수 있는 녹음테이프, 음반,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등은 문서 또는 도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주3) 이와같은 저작권법상의 출판권개념에 의하면, 저작물을 컴퓨터가 처리하는 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출판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이 출판권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출판계약에 그러한 코드화를 특별히 허락하는 규정이 없는 한, 출판권의 범위가 전자책 출판까지 포함하도록 넓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주4) 저작물을 낭송하는 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이 통상의 출판권의 범위밖의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을 CD-ROM의 형태로 제작·판매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통신망을 통하여 보급하는 것도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의 범위 밖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판허락계약하에서의 출판권의 범위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겠지만,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계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그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설정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주5) 특히 출판허락계약에 의하여 출판자가 배타적인 출판권을 가진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그 배타적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설정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와 마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출판허락계약내에 출판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물론 그러한 계약 규정에 따라서 출판자의 출판권은 결정될 것이다. 출판권에 관한 계약규정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설정출판권보다 좁은 범위의 출판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설정출판권보다 넓은 범위의 출판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 저작물을 문서형태의 책으로 뿐만아니라 CD-ROM형태 또는 데이터베이스형태로 제작·보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허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포괄적 허락의 경우에 저작권자로서는 전자책의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일정한 보상도 함께 규정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출판권설정계약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규정된 출판권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출판권을 허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책의 제작 및 보급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추측하건대, 전자사식 등의 출판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종이로 된 책의 출판과 데이터베이스 또는 CD-ROM의 제작 및 보급은 서로 밀접히 관련된 영업이 될 것이고 하나의 회사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취급되거나 다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취급되기 쉬운 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판권설정계약이나 출판허락계약은 모두 전자책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도

[82]

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주6)

전자책의 제작 및 보급이 출판권의 범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책 제작업자가 원저작물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지 등의 문헌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CD-ROM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각 문헌의 간단한 소개를 위한 초록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데에도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겠지만, 초록이 원저작물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초록작성이 원저작물의 복제 또는 개작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어느 신문사가, 동 신문에 실린 글들에 관한 초록과 함께 목록을 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으나 프랑스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바 있다.주7) 그러나 미국에서, 어느 판례편찬회사의 법령집을 기초로 해서 법률정보전산망회사가 판례의 초록과 인

용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고객들에게 공급한 경우에,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판례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주8) 참고로, 영국저작권법은, 별도의 공인된 저작물이용허락체제가 없으면, 학술적 또는 기술적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동 문헌의 초록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9)

III. 전자책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저작물이 하나의 CD-ROM에 들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입력되어 다시 편집되고 전달되고 이용되는데, 이러한 전자책 형태의 저작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취득하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CD-ROM형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저작물이 다수의 저작물 또는 정보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른바 편집저작물인 경우에 그러한 편집저작물에 대하여 누가 저작권을 취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CD-ROM 형태 등의 편집저작물이 다수의 원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편집저작물의 무단복제가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그러한 편집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편집저작물이 일반적인 공유의 정보(Information in public domain)인 경우에는 편집저작물 자체의 저작권존재 여부에 관한 회의는 더욱 커진다. 편집저작물에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성립되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외국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

영미에서의 저작물이란 저자의 독자적인 "노력과 자본의 투입(Sweat of the brow)"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실이라고 파악되어 왔다. 저작물의 이러한 개념정의는 많은 종류의 편집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발전에 도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

[83]

로 해석되고 있다. 예컨대, 17세기와 18세기의 미국에서는 서부개척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러한 서부개척에 있어서 새로 개척되어가는 지역의 상세한 지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 이러한 지도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힘입어서 지도의 제작·판매에 충분한 노력과 자본이 투입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지도의 저작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정 지도가 예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도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에 독자적인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되었던 것이다. 저작물에 관한 일정 수준의 창작성이 아니라 저작물의 제작에 투입된 노력과 기술 및 자본으로부터 저작물성의 기준을 찾음으로써,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정보들이 일정수준의 노력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서 수집된 것인한, 그러한 정보와 사실들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이라거나 음악 또는 미술 등의 전통적인 문예저작물의 경우에는, 노력과 자본의 투입이 없는 한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일정 수준의 독창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력과 자본의 투입여부라고하는 기준이 반드시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노력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

와 사실들 자체는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성이 없기 때문에, 노력과 자본의 투입여부라는 기준만으로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면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사실들까지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영미의 판례를 보더라도, "노력과 자본의 투입"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편집저작물의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넓은 범위의 저작권보호를 인정해 왔다. 즉, 기존 저작물의 사실 및 정보와 동일한 사실과 정보들의 경우에는, 제3자가 자신의 노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스스로 수집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없이 타인의 노력과 자본투입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영미 판례는 저작물제작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의 회수를 보호한다는 정책적 목표 아래서, 저작물의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물이 기초가 되는 사실과 정보들까지도 보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참조해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첨가하고 변경된 전화번호는 바꾸어 넣어서 경쟁적인 전화번호부를 만든 경우,주10) 900여개의 쇼핑센터들을 열거하고 있는 피고의 쇼핑센터목록에서 300개의 쇼핑센터들은 원고의 목록에서 찾아서 그 진위를 확인한 후에 이용한 경우,주11) 이름별로 정리된 전화번호부를 주소별로 재정리해서 새로운 전화번호부를 만든 경우,주12) 원고의 법조수첩이 개업하고 있는 사무변호사(Solicitors: 법정변호사 즉 Barristers에 대응하는 개념)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가 그 목록을 참조해서 변호사 주소 등의 진위를 확인한 후에 상이한 디자인으로 법조수첩을 제작한 경우주13) 등에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되었다.

이와 같이, 편집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정보들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인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에 위반될 뿐만아니라, 저작

[84]

권자에 의한 사실과 정보들에 대한 독점으로 인해서 일반 공중의 정보에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제3자에 의한 경쟁을 크게 제한할 것이다. 투입된 노력과 자본의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과 정보들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바람직한 역할과도 양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법규에 따라서 구제를 받음으로써 노력과 자본의 회수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저작권법하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것은 저작권법의 역할을 왜곡시킬 뿐인 것이다.주14) 저작권법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문학과 예술 및 과학을 향상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사실과 정보의 독점이라거나, 투입된 노력과 자본의 회수 자체를 그 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투입된 노력과 자본의 회수를 보호하는 것이 과학과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노력과 자본의 투입을 유인하는 효율적인 인센티브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투입된 노력과 자본의 회수 보호가 곧바로 사실과 정보의 독점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주15)

2.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영미에서의 "노력과 자본의 투입여부"라고 하는 기존의 창작성 기준은 특히 편집저작물에 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이 편집저작물에도 적용되어서, 최근 미국 판례에서,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은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정보들(facts)의 선택, 정리 또는 배

열"이 독자적이고 창작적인가의 여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작물성 기준의 변화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09년 연방저작권법은 저작물성의 기준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저작물의 예로서 몇가지의 대표적인 저작물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인명록, 전화번호부 등의 편집저작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1909년 저작권법에는 인명록 등의 편집저작물이 저작물로 예시되어 있어서,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특정 편집저작물의 제작에 독자적인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것인 한 저작물로 성립된다고 판단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후 개정된 1976년 연방저작권법은 예시되어 있었던 저작물을 삭제하고 그대신,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을 설명하는 조항에서 "창작적(original)"이라는 형용사를 삽입함으로써 창작성있는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주16) 특히 편집저작물을 "기존의 자료 또는 정보가 선택·배열·구성된 저작물로서 창작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주17)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요건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1976년 저작권법의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기존 판례상의 저작물성의 기준을 성문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1976년 저작권법하에서는 편집저작물

[85]

의 저작물성이 부인된 경우가 많아진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Financial Information, Inc. v. Moody's Investors Service., Inc.주18) 사건에서, 매일매일 사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채목록카드의 저작물성에 관해서, 사채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 단순 작업에 해당되고 문제된 사채정보의 수집 및 편집에 사채카드 제작자의 독자적인 판단력이 개입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된 사채목록카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되었다. 여기에서 관할 항소법원은, 노력과 자본의 투입이라고 하는 기준만에 의해서 저작물의 성립을 인정하면, 많은 범위의 사실과 정보들이 소수의 선발 저작권자에게 독점되고, 결과적으로 후발업자들과 일반 소비자 공중의 정보에의 접근이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최근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Inc.주19) 사건에서는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이 문제되었는데,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을 전제로 해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했는데,주20)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화번호의 수집에 노력과 자본을 투입한 것만으로 창작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집한 전화번호의 선택에 창작적인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알파벳 순이라고 하는 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배열한 전화번호부는 창작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전화번호부에 저작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Feist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으로서 "노력과 자본의 투입여부"라고 하는 기준을 버리고 "구성사실 및 정보(facts)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이 창작적인가의 여부를 그 기준 판결들에 대해서 중대한 결론을 제시해 주었다.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라고 하는 기존의 기준이 더 이상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Feist판결이 편집저작물 일반에 널리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CD-ROM 등의 전자책 형태의 저작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극히 불분명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단 편집저작물에 있어서 다른 저작물과는 상이한 창작성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전자책 형태의 저작물의 저작권보호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독일과 일본(주21)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는, 저작물 창작성의 일반적 기준에 있어서, 영미에서보다는 높은 상당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주22) 독일에서도 본래는 저작물의 창작성이라는 요건에 심각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었는데, 70년대말부터 창작성의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법원이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과학·기술적 성격이 있는 저작물이 일반 공중에 의해서 널리 이용됨으로써 교육, 연구 및 개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창작성이 낮은 평범한 수준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성립을 부인했다. 저작물이용의 증진 뿐만 아니라 지적소유권법의 전

[86]

반적인 체계의 변화에도 그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잘정비됨에 따라서 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의 상업적인 이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주23)

3. 편집저작물에서의 저작자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저작물을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창작성의 요건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특히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주24) 편집저작물이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소재의 수집에 많은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었지만 그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편집저작물은 보호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도 누가 그 저작자로 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편집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다수의 자연인이 공동저작자로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이 반드시 그러한 소재의 수집 및 입력이라고 하는 단순작업을 하는 자연인으로부터 나온 것인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편집저작물이 공동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기 때문에, 편집저작물이 공동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만 않을 것이다. 또한 공동저작으로 된 편집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공동저작자들은 그러한 편집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자본을 투입하고 총괄적인 기획을 한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편집저작물의 제작자가 소요경비 등의 자본을 투입하고 소재의 수집, 선택, 배열 등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집저작물의 제작자가 곧 그 저작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주25) 편집저작물의 제작자가 법인 기타의 단체인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그러한 법인 등이 그 저작자로되고 저작권도 취득하게 된다.주26) 특히 CD-ROM이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 제작자인 법인이나 단체가 위험부담 속에 투자를 하고 그 제작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작자로 된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창작성이 없는 저작물을 단순히 전산화하여 전자책의 형태로 판매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치 음반 등의 제작업자가 가지는 저작권접권과 유사한 권리를 전자책의 제작업자에게도 부여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전자책 제작의 구체적

관행과 업계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4. 전자책과 복제의 개념

오늘날의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산

[87]

화되어 있고 CD-ROM의 경우에는 물론 전산기계의 도움으로 제작되고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전산기계의 도움으로 제작·배포·이용된다는 것은 대단히 편리하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용이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커다란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종이로 된 책의 경우에는 기존의 복제기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복제될 수 있고 복제된 저작물은 원본에 비하여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전자책의 경우에는 아주 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복제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자책의 출현으로 인하여 저작권보호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복제의 의미를 새롭게 구체화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복제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복제"를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전자책의 출현과 관련하여 복제의 의미를 보다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기존의 복제의 개념 가운데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고정적 기억장치에 입력하거나 그러한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저작물을 출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된다.주27) 이와같은 복제개념에 의하면, 전자책에 다수의 원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전자책의 기획 및 제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의 작업으로서 원저작물을 컴퓨터 등의 전산기억장치에 입력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입력행위가 복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책을 이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검색하거나 프린트해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도 반드시 저작물이 컴퓨터의 RAM과 같은 일시적 기억장치에 기억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고 따라서 저작권법상 복제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무런 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CD-ROM형태나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을 플로피 디스크로 복제하는 행위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IV. 전자책의 출현과 출판업계의 변화

전자책의 등장으로 인하여 저작권제도는 파괴되고 기존의 출판업계는 아무런 보호 및 보상장치도 없는 가운데 커다란 손실을 보고 결국 망하고 말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업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작자와는 별도로 출판사들에게 별도의 권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책의 출현이 새로운 매체를 제공해줌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를 더욱 더 많이 창출해주는 역할도 하고,주28) 전자관련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증가된 저작권침해의 위험도 새로운 저작권법기술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출판업계가 전자책의 출현에 대하여 걱정만할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전자책

의 시대에 출판사들이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또

[88]

는 관련된 권리는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권리를 행사하고 확보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출판사에게 출판권이외에도 커버디자인 등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출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주29) 전자책의 제작과 관련한 통신프로그램이나 분류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경우 그러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보호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새로운 권리를 꾸준히 모색해나고 출판권을 포함한 저작권의 행사와 저작권법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책의 출현으로 인하여 출판업계가 특히 손실을 보고 파산될 위험에 부딪혔다고 보는 것은 속단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전자책의 출현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더욱 증대하고 출판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출판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이로 된 책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전자책의 경우에는 누가 언제 이용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가 용이하다. 이것은 마치 전화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누가 어느곳에 얼마만큼 전화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전화요금이 얼마인가가 컴퓨터에 의하여 쉽고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용료 징수는 물론 저작권집중관리를 전제하여서만 가능할 것이다. 전자책 제작업자로서는, 제작하고자 하는 전자책 또는 편집저작물의 소재 자체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아야 할 것이고 저작물 이용료의 분배도 그러한 저작권자를 알아야 가능할 것인데, 소재가 되는 저작물이 다수(예컨대 수만 또는 수십만)인 경우에 다수의 저작권자를 모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협상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면 편집저작물의 제작 자체보다도 그 소재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저작권이 일정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주30)에 의하여 위탁관리될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러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시하는 저작물이용료의 합리적인 산정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주0)

* 이 논문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1992.10.13~14 양일간 남한강 종합수련원에서 주최한 저작권문화가족연수 프로그램 중 강의 ①에 쓰였던 것으로 필자께서 다시 보완하여 주신 것을 실었다.

주1)

Jeremy Philips,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Law(London, Butterworths, 1986), p.257.

주2)

[저작권법 제54조 내지 제60조.](#)

주3)

[황적인/최현호, 저작물과 출판권, 87면 참조.](#)

주4)

송진정행, [コピー-タ時代の 지적소유권\(동경, きょうせい, 1988\), 57.](#)

주5)

[허희성, 신저작권법촉조해설, 288면.](#)

주6)

[Michael F.Flint, A User's Guide to Copyright\(London, Butterworths, 1990\), p.315.](#)

주7)

[Societe Microfor v Sarl 'Le Monde' \[1988\] FSR 519, recited from G.Dworkin and R. D.Taylor, Copyright, Designs & Patents Act 1988\(London, Blackstone Press, 1989\), p. 188.](#)

주8)

[West Publishing Co. v Mead Data Central Inc., \[1986\] 799 F. 2d 1219.](#)

주9)

[1988년도 영국 저작권법 제60조.](#)

주10)

[United Tel. Co. of Mo. v Johnson Pub. Co., 855 F. 2d 604\(8th Cir. 1988\).](#)

주11)

[United Tel. Co. of Mo. v Johnson Pub. Co., 855 F. 2d 604\(8th Cir. 1988\).](#)

주12)

[National Research Bureau v Kucher, 481 F. Supp. 612\(S.D.N.Y. 1979\).](#)

주13)

Illinois Bell Tel. co. v Haines &Co., 905 F. 2d 1081(7th Cir. 1990).

주14)

Waterlow Publishers Ltd. v Rose, The Times, 8 December 1989; Waterlow Directories Ltd. v Reed Information Services Ltd., The Times, 11 October 1990.

주15)

Shira Perlmutter, The Scope of Copyright in Telephone Directories: Keeping Listing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38 J. Copr. Soc'y 1, 3(1991).

주16)

Manfred Kindermann, Copyright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in Germany, [1991] EIPR 300.

주17)

17 U.S.C.A. Sec. 101.

주18)

미국 1976년 저작권법 102(a)조.

주19)

808 f. 2d 206~8(2d Cir. 1986).

주20)

Ringer, Copyright in the 1980s, 23 Bull. Copyright Soc'y 299, 305(1976).

주21)

일본 저작권법은 특히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이 그 구성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갖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는 창작성 요건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2조 2).

주22)

Jane C. Ginsburg, "Creation and Commercial Value: Copyright Protection of Works of Information." 90 Columbia L. Rev. 1805(1990) at 1909.

주23)

Dennis S.Karjala, [1988] 12 EIPR 360.

주24)

한국 [저작권법 제2조](#) 및 [제6조](#).

주2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32면.

주26)

[저작권법 제9조](#).

주27)

영국 1988년 저작권법 제17조 2항의 유사한 규정참조.

주28)

Rights(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Service of Creativity), Vol.6, No.2, p.4.

주29)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서울, 나남출판사, 1992\), 239면](#).

주30)

한국 저작권법 제6장 [제78조 내지 제80조](#) 참조.